

제3091호
2024. 5. 8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
 편집인 : 홍보담당관 유진영
 전화 : 3396-4955
 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494호

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6호(2010.08.2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·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697호(2021.12.16.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0호(2023.04.26.)로 정비계획 변경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851호(2023.09.20.)로 주민 공람·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을 2024년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04.03.)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·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 장소(중구청 도심정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중구 입정동 237 일대	12,316.6	-

- Ⅱ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(변경)

구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합 계		12,316.6	100.0	-
획 지		10,336.1	83.9	-
소 계		1,980.5	16.1	-
정비기반시설	도 로	345.9	2.8	-
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		1,634.6	13.3	-

◎ 공 고

제2024-494호 : 수표 도시경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·공고 2

제2024-503호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상행계획(경향)변경(안)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·공고 ... 15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는 공무원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[illegible]
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합 계	12,316.6	100.0	-
일반상업지역	12,316.6	100.0	-

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1) 방화지구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-	방화 지구	종로구 종로2가 및 3가, 관철동, 관수동, 중구 남대문로 1가,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, 수표동, 입정동, 을지로2가 및 3가 각 일부지역	320,000 (12,316.6)	’73.8.1. (건고제317호)	-

※ ()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임

3.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가. 토지 등 소유자별 권리가액

구 분		종전 토지등의추산액		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(B)	비용부담액(C)	분담금추산액 (A+B+C)	분담율 (%)
		금액(A)	비율 (%)				
합 계		256,961,769,930	100	477,418,230,070	599,602,000,000	1,333,982,000,000	100
토지등 소유자	입정동237 외 107필지	248,742,767,840	96.8	462,147,859,572		710,890,627,412	53.29
	입정동230-1 외 22필지	8,219,002,090	3.20	15,270,370,498		23,489,372,588	1.76
사업시행자		-	-	-	599,602,000,000	599,602,000,000	44.95

※ 종전 토지등의 추산액은 '21. 4월 구청선정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금액 적용

나.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

구 분		권리가액	분양예정가(원/㎡)		분담금
			근린생활시설	업무시설	
토지등 소유자	입정동237 외 107필지	710,890,627,412	13,000,000	10,000,000	분담금 = 토지등 소유자별 권리가액-(시설별 분양예정가 × 분양받는 면적)
	입정동230-1 외 22필지	23,489,372,588			
사업시행자		599,602,000,000			

※ 분양예정가는 추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변경계획수립시 종후자산감정평가시 확정되며, 분담금은 토지 등 소유자별 권리가액 및 분양신청물건에 따라 관리처분변경계획수립시 확정예정임

다.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

구 분	금액(A)	비 고
총 금 액	1,333,982,000,000	대지비 + 공사비 + 대지조성비
대 지 비	797,517,000,000	추정 토지매입비
공 사 비	536,465,000,000	52,518평 × 평당 약 1,021만원
대지조성비	63,137,000,000	대지조성공사비, 철거비, 정비기반시설공사비, 명도보상비, 지질조사,측량비, 개발부담금등
분양예정대지평가액	860,654,000,000	대지비 + 대지조성비
종전 토지등의 추산액(A)	256,961,769,930	2021년4월 구청선정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
분양예정대지평가차액(B)	477,418,230,070	분양예정대지평가액-대지조성비-종전토지등의 추산액
비용부담액(C)	599,602,000,000	공사비 + 대지조성비
분담금 추산액	1,333,982,000,000	A+B+C

※ 상기비용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변경계획수립시 종후자산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확정예정임

4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: 변경

가. 교통시설 : 변경

1) 도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1	9	집산 도로	일반 도로	42	을지로3가 104-2	을지로3가 104-13	-	서울시고시 제2005-255호 (2005.8.25)	충무로9길
기정	중로	3	3	9.5~13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77 (87)	을지로3가 5-4	입정동 262	-	서울시고시 제2010-306호 (2010.8.26)	을지로11길
기정	소로	3	1	7~7.5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26	을지로3가 104-13	을지로3가 96-2	-	서울시고시 제2010-306호 (2010.8.26)	충무로11길 을지로13길

※ ()는 수표구역 내의 연장임

2) 철도 결정 조서 : 변경

결정 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	378.4	서울시고시 제46호 (1982.2.9)	수표구역 내 면적편입
변경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	374.4	서울시고시 제46호 (1982.2.9)	

3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조서 : 변경

결정 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입체적 결정규모		비고
				구분	규모	
기정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	면적 (㎡)	378.4	• 입체적 결정범위(출입구 일부) - 지상1층 : A=112.3㎡ H=24.4m(해수면기준) - 지하1층 : A=315.4㎡ H=24.4m~17.6m(해수면기준) - 지하2층 : A=139.5㎡ H=17.6m~13.7m(해수면기준)
				높이 (m)	13.7~24.4	
				층수	지하2층~ 지상1층	
변경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	면적 (㎡)	374.4	• 입체적 결정범위(출입구 일부) - 지상1층 : A=122.7㎡ H=24.2m(해수면기준) - 지하1층 : A=305.7㎡ H=24.2m~17.2m(해수면기준) - 지하2층 : A=300.1㎡ H=17.2m~14.5m(해수면기준)
				높이 (m)	14.5~24.2	
				층수	지하2층~ 지상1층	
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• 입체적 결정 면적 변경 - 변경전 면적 : 378.4㎡ - 변경후 면적 : 374.4㎡ • 입체적 결정 높이 변경 - 변경전 높이 : 13.7~24.4m - 변경후 높이 : 14.5~24.2m	• 지하철출입구 이설 및 검용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관련부서(서울교통공사)와의 협의에 따라 입체적 결정규모(면적,높이)를 변경

5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(부담) 계획 : 변경

가.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기존 정비기반 시설면적 (㎡)	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(㎡)				순부담률 (%)
				계	도로	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	건축물 환산부지	
기정	12,316.6	10,336.1	510.8	2,753.7	345.9	1,634.6	773.2	17.83
변경	12,316.6	10,336.1	510.8	3,182.0	345.9	1,634.6	1,201.5	20.54
증감	-	-	-	증) 428.3	-	-	증) 428.3	증) 2.71

※ 순부담률 = (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-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) / (시행면적 -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)
= (3,182.0㎡ - 510.8㎡) / (13,518.1㎡ - 510.8㎡) = 20.54%

나. 정비기반시설 설치(확보) 계획 : 변경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2,753.7	증) 428.3	3,182.0	100.0	-
토지	소계	1,980.5	-	1,980.5	62.2	-
	도로	345.9	-	345.9	10.8	-
	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	1,634.6	-	1,634.6	51.4	-
건축물		773.2	증) 428.3	1,201.5	37.8	환산부지면적

6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: 변경

가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: 변경없음

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·개량계획(동)					비고
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수표구역	12,316.6	획지	10,336.1	중구 입정동 237 일대	94	-	-	-	94	-

※ 건축물 현황은 사업부지 철거 이전일(‘23년 9월)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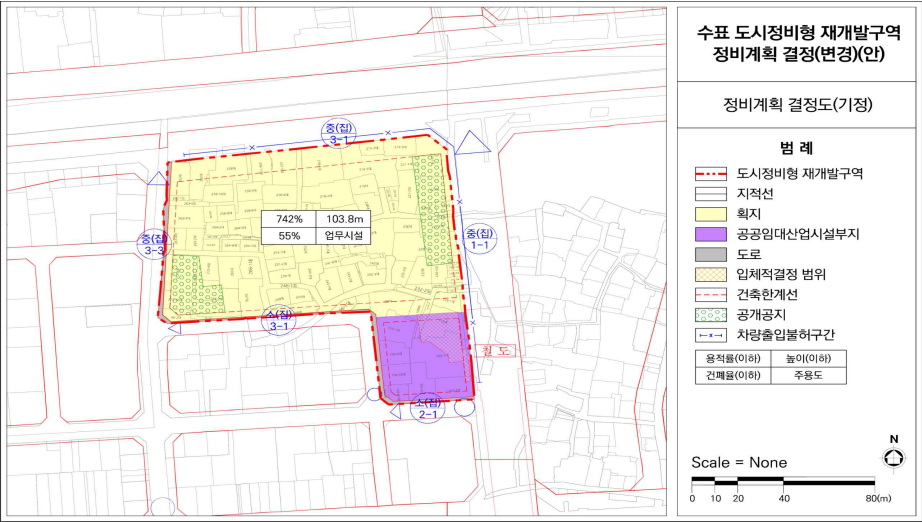
나. 건축시설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
기정	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12,316.6	획지	10,336.1	중구 입정동 237 일대	업무	55이하	기준 : 450이하 허용 : 600이하 상한 : 742이하	103.8 이하
			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	1,634.6	중구 입정동 262 일대				
변경	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12,316.6	획지	10,336.1	중구 입정동 237 일대	업무	50이하	기준 : 600이하 허용 : 800이하 상한 : 1,178이하	148.8 이하
			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	1,634.6	중구 입정동 262 일대				
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		• 최고높이계획 : ① + ② + ③ : 148.8m 이하 적용 ① 기준높이 : 70m ② 개방형녹지 : 73.6m = [건폐율(50%) × {기준높이(70m)+20m}] ÷ {80% - 개방형녹지율(48.7%)} ③ 공개공지 초과 : 5.2m = {기준높이(70m) × 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(1,531.4㎡) ÷ 2} ÷ 대지면적(10,336.1㎡)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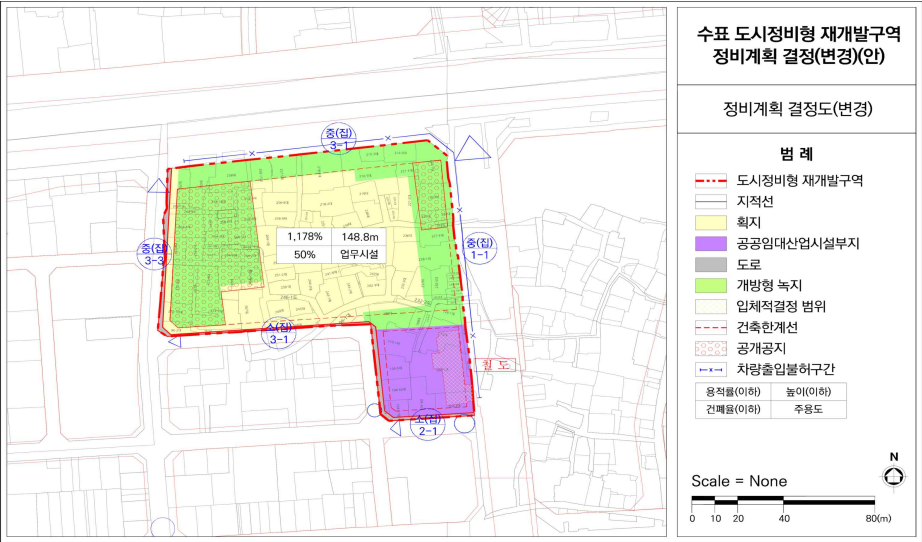
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	• 용적률계획 : ① + ② + ③ : 1,178%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: 600% ② 허용용적률 : 800% (200% 적용)						
	구분	인센티브 완화요건		산정방식	완화량		
	문화인프라	• 전시장,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 등		정률부여(보상계수 0.3) (최대 50%)	30%		
	친환경 개발	• 녹색건축물 인증, 에너지 효율등급,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		정량부여 (최대 30%)	30%		
		• 전기차충전소 설치		정량부여 (최대 20%)	20%		
	녹지 생태공간	•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		정률부여(보상계수 2) (최대 100%)	70%		
	보행가로 활성화	• 무장애도시 조성		정량부여 (최대 30%)	30%		
	안전·방재	• 방재 관련시설		정량부여 (최대 20%)	20%		
	소계			-	200%		
	③ 상한용적률 : 1,178% 이하 (378% 적용)						
공공 시설	구분	적용내용		완화량			
	도로	허용용적률×(1+1.3×α)	800%×(1+1.3×0.1422) [α=(1,980.5 - 510.8)÷10,336.1]	147.9%			
	공공임대 산업시설 부지	허용용적률×(1+1.2×α)	800%×(1+1.2×0.1162) [α=1,201.5÷10,336.1]	111.6%			
	공개공지 초과조성	허용용적률×(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:대지면적)	800% × [(2,565 - 1,033.6) ÷ 10,336.1]	118.5%			
	소계			- 378%			
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	• 지정용도 :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(근린생활시설, 전시시설 등)						
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	건축한계선	• 획지 : 청계천로변 10m, 충무로·을지로11길·충무로11길변 3m •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: 북측 인접대지경계선 1m, 그 외 도로변 3m					
기타사항에 관한 계획	전면공지	•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					
	공개공지	• 간선가로변 : 청계천로·충무로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 • 이면가로변 : 충무로11길·을지로11길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					

7. 정비계획 결정도

<정비계획 결정도(기정)>



<정비계획 결정도(변경(안))>



Ⅲ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중구 입정동 237 일대	12,316.6	-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합 계	12,316.6	100.0	-
일반상업지역	12,316.6	100.0	-

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1) 방화지구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-	방화 지구	종로구 종로2가 및 3가, 관철동, 관수동, 중구 남대문로 1가,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, 수포동, 입정동, 을지로2가 및 3가 각 일부지역	320,000 (12,316.6)	'73.8.1. (건고제317호)	-

※ ()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임

다. 기반시설 결정조서

1) 도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1	9	집산 도로	일반 도로	42	을지로3가 104-2	을지로3가 104-13	-	서울시고시 제2005-255호 (2005.8.25)	충무로9길
기정	중로	3	3	9.5~13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77 (87)	을지로3가 5-4	입정동 262	-	서울시고시 제2010-306호 (2010.8.26)	을지로11길
기정	소로	3	1	7~7.5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26	을지로3가 104-13	을지로3가 96-2	-	서울시고시 제2010-306호 (2010.8.26)	충무로11길 을지로13길

※ ()는 수표구역 내의 연장임

2) 철도 결정조서 : 변경

결정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	378.4	서울시고시 제46호 (1982.2.9)	수표구역 내 면적편입
변경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	374.4	서울시고시 제46호 (1982.2.9)	

3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조서 : 변경

결정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입체적 결정규모		비고
				구분	규모	
기정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	면적 (㎡)	378.4	- 입체적 결정범위(출입구 일부) - 지상1층 : A=112.3㎡ H=24.4m(해수면기준) - 지하1층 : A=315.4㎡ H=24.4m~17.6m(해수면기준) - 지하2층 : A=139.5㎡ H=17.6m~13.7m(해수면기준)
				높이 (m)	13.7~24.4	
				층수	지하2층~ 지상1층	
변경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	면적 (㎡)	374.4	- 입체적 결정범위(출입구 일부) - 지상1층 : A=122.7㎡ H=24.2m(해수면기준) - 지하1층 : A=305.7㎡ H=24.2m~17.2m(해수면기준) - 지하2층 : A=300.1㎡ H=17.2m~14.5m(해수면기준)
				높이 (m)	14.5~24.2	
				층수	지하2층~ 지상1층	
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도시철도 (을지로3가 정거장)	- 입체적 결정 면적 변경 - 변경전 면적 : 378.4㎡ - 변경후 면적 : 374.4㎡ - 입체적 결정 높이 변경 - 변경전 높이 : 13.7~24.4m - 변경후 높이 : 14.5~24.2m	지하철출입구 이설 및 겸용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관련부서(서울교통공사)와의 협의에 따라 입체적 결정규모(면적, 높이)를 변경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
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	계획내용	비 고
신설	허용용도	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	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

2) 건축물의 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
■ 건폐율 계획

구 분		계획내용	비 고
신설	수표구역	50% 이하	-

■ 용적률 계획

구 분		계획내용	비 고
신설	수표구역	600% / 800% / 1,178% 이하	-

■ 높이 계획

구 분		계획내용	비 고
신설	수표구역	148.8m 이하	- 개방형 녹지 완화 : 143.6m - 공개공지 초과조성 : 5.2m

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구 분		계획내용	완화량	비 고
신설	문화인프라	• 전시장,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 등	30%	200%
	친환경개발	• 녹색건축물 인증, 에너지 효율등급,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	30%	
		• 전기차충전소 설치	20%	
	녹지생태공간	•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	70%	
	보행가로활성화	• 무장애도시 조성	30%	
안전방재		• 방재 관련시설	20%	

■ 상한용적을 완화 사항

구 분		계획내용	완화량	비 고
신설	공공시설 등 기부채납	• 토지(도로,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) :1,980.5㎡	132.5%	378%
		• 건축물(공공임대산업시설) : 1,201.5㎡	111.6%	
	공개공지 초과조성	• 법정 공개공지 : 1,033.6㎡ • 초과 공개공지 면적 : 1,531.4㎡	118.5%	

나.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	계획내용		비 고
신설	건축한계선	획 지	• 북측 중로3-1호선(청계천로) : 10m • 동측 중로1-1호선(충무로) : 3m • 서측 중로3-3호선(을지로11길) : 3m • 남측 소로3-1호선(충무로11길) : 3m	-
		공공임대 산업시설 부지	• 북측 인접대지(획지)경계선 : 1m • 동측 중로1-1호선(충무로) : 3m • 서측 소로3-1호선(을지로13길) : 3m • 남측 소로2-1호선(충무로9길) : 3m	-

다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
1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	계획내용		비 고
신설	보도부속형 전면공지	획 지	• 북측 중로3-1호선(청계천로) : 10m • 동측 중로1-1호선(충무로) : 3m • 서측 중로3-3호선(을지로11길) : 3m • 남측 소로3-1호선(충무로11길) : 3m	서측,남측 보도부분 지상권 설정 (중구청장)
		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	• 북측 인접대지(획지)경계선 : 1m • 동측 중로1-1호선(충무로) : 3m • 서측 소로3-1호선(을지로13길) : 3m • 남측 소로2-1호선(충무로91길) : 3m	-
	공개공지	이면가로변	• 충무로11길·을지로11길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	-
		간선가로변	• 청계천로·충무로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	-

2)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	적용위치	면적(㎡)	계획내용	비 고
신설	개방형 녹지	청계천로변, 충무로변, 을지로11길변	5,030	• 조성계획 : 구역 서측, 동측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조성	-
				• 유지관리 :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	-

Ⅳ. 기 타

- 1) 공람기간 : 2024. 05. 08. ~ 2024. 06. 07.(31일간)
- 2)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
-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2)
- 3)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503호

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57호(2007.5.25.)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1호(2010.3.18.)로 정비구역(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-53호(2017.7.12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사항)변경, 중구고시 제2018-61호(2018.5.30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사항)변경, 중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8.1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변경 정정고시, 중구고시 제2023-6호(2023.1.18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사항)변경 및 중구고시 제2023-36호(2023.6.7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사항)변경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131호(2018.11.2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3-42호(2023.7.26.)로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된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(조합)로부터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 서류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, 관계 서류에 대해 공람을 실시하오니,
- 본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공람기간 : 2024. 5. 8.(수) ~ 2024. 5. 22.(수) (공고일 포함 15일간)
- 공람장소
 - 중구청 도심정비과 사무실(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본관 6층)
 -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26, 3층)
-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를 위한 공람내용
 -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-1번지 일대
 - 시행면적 : 58,651.3㎡
 -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 - 명 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이정수)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26, 태관빌딩 3층
-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
 -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 사유 및 내용
 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(공람장소 비치)
 - 무허가건축물 추가 3건
 - 건축물 면적 정정 1건
 - 지번 오기 정정 6건
 - 지분 정정 4건
 - 공유 표기 정정 5건
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열람내용
 -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 - 명 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이정수)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26, 태관빌딩 3층
 -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 - 명 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사업예정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-1번지 일대(58,651.3㎡)
 - 관계도서 : 열람장소 비치
 - 의견제출 :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출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- 제출장소 : 중구청 본관 6층,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23)
 - 제출기한 : 2024. 5. 22.(수) 18:00까지
- ※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(기관) 협의 결과, 공람의견 결과 및 반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